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3. 17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. 3. 17

다. 상정일자 : 제125회 사하구의회의임시회(폐회중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 3. 30)

2. 제안설명요지(황해룡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폐지, 여유기구제의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과 주택가격평가, 일제강점동원 관련 및 수질오염 총량제 등 신설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의 총수 691명을 7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76명을 692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
▷ 직급별(일반직) 증원안 : 총 16명

· 5급 : 39명 ⇒ 40명 ▷ 증1명

· 7급 : 169명 ⇒ 174명 ▷ 증5명

· 8급 : 180명 ⇒ 188명 ▷ 증8명

· 9급 : 78명 ⇒ 80명 ▷ 증2명

-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(안 제3조)
-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4조)
- 일제강점동원 관련 증원되는 구분청의 정원중 일반직 8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(부칙 제2항)

3. 관계법령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필요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 역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새기구인 재난관리과 신설과 행자부 지침에 의한 신설업무(주택가격평가, 일제강점동원 관련업무, 수질오염 총량제등)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승인받아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 위에 제시된 주요골자와 같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결과 대통령령 및 행자부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
- 다만 2005. 1. 1부터 각종 법률 및 조례를 제·개정 할 때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법제처의 지시가 있었음에 따라 금번 개정되는 조례 역시 그 제명 및 기타 지시된 사항을 개정조례에 반영해야 되는데 본 개정안에도 이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음. 그러나 이 사항을 개정

조례마다 일일이 표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안으로 법제처의 띄어쓰기 시행안내 내용을 조례로 제정 그 조례에 따라 다른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명 등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며, 그 예로 95. 1. 12 조례316호로 공포된 “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”를 볼 수 있는데 이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 중 “부산직할시사하구”를 “부산광역시사하구”로 하는 등 “직할시”로 되어있는 문구는 전부 “광역시”로 고치도록 하는 사항을 조문 없이 한 문장으로 제정하였던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사항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집행부에 제안하니,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